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62-14

사람과 기술, 문화로 움직이는 부산

규제 개선사례 70선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부산시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규제개선 사례 70선>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규제도 반대합니다. 규제개혁은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돈 안 들이는 투자'입니다.

우리 시는 나쁜 규제는 뽑아내고, 좋은 일자리 씨앗을 많이 뿌린다는 생각으로 각종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 중심,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고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실천한 결과 지난해에는 정부의 규제 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에는 결코 마침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인과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작은 불편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개선사례 70선>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인식을 높이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목차 Content



제1장 일반공공행정 분야

01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120) 운영 07
0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08
03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09
04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10
05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11
06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12
07 전입신고와 주소변경 등기대행 일괄 처리 13

제2장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8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15
09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보강 시스템화 16

제3장 교육 분야

1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개선 18

제4장 문화 및 관광 분야

11 문화재 시외반출 가능 및 행정명령 재량권 축소 20
12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21
13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 22
14 낙동강생태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우선사용 개선 23
15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사용기준 구체화 24

제5장 환경보호 분야

1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 확대 26
17 환경친화적(전기, 그 외) 자동차 표지 구분 명확화 27
18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 등록요건 완화 28
1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29
20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30
21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 31
22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확대 32
2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33
24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34
25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35

제6장 사회복지 분야

26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37
27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38
28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39
29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40
30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41
31 출산장려금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42

제7장 보건 분야

32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44
3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설정 45
34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46

제8장 농림해양수산 분야

35 유휴항만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48
36 선박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49
37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50
38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기준 완화 51
39 마리나업 등록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허용 52
40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53
41 양식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완화 54

제9장 산업·중소기업 분야

42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녹산산단 입주허용 56
43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 57
4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58
45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획지 및 유치업종 변경 59
46 사도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자 부담 완화 60
47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61
48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62
49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63
50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일원화 64

제10장 수송 및 교통 분야

51 문현동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확장 66
52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 및 운휴일 명확화 67
53 교통신호기 입찰참가자격 완화 68
54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명확화 69

제11장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71
56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부서 일원화 72
5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차장 입지기준 삭제 73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74
59 일반주거지역(제2·3종)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 75
60 시민안전을 위한 공중선 정비체계 개선 76
61 유아숲지도사 배치 근거 마련 77
62 도시공원 및 낙동강생태공원 야외결혼식 허용 78
6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79
64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범위 확대 80
65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지침 개선 81
66 공개공지 설치 기준 완화 82
67 건축허가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 폐지 83
68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로 지역상권 활성화 84
69 지역여건에 맞는 주유소 배치계획 재정비 85
70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 폐지 86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88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90
사례집 기능별 분류 91

PART 1

일반공공 행정 분야

01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120) 운영
0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03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04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05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06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07 전입신고와 주소변경 등기대행 일괄 처리

1 통합민원시스템(부산민원120) 운영

추진부서 통합민원담당관 888-1464

개선배경

▷ 온라인 민원·제안접수 채널(56개*)이 너무 많아 시민혼란 가중 및 민원분배·처리부서 다원화, 민원업무 통합 미흡으로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 인터넷(시민참여 15, 전자민원 23), 모바일(120바로콜센터, 톡톡부산밴드), SNS(블로그 4, 트위터 6, 페이스북 5, 카카오스토리 1)

▷ 국민신문고, 시와 16개 구·군의 민원처리정보가 분산되어 통합된 시민의견 수렴이 어려우며, 상담창구의 이원화(시정상담 120, 상수도상담 121)로 통합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민원신청 채널 분산 · 접수부서 다원화(업무별 담당부서) · 콜센터 상담민원 이원화 (시정상담 120번, 상수도상담 121번)	»	· 민원신청 채널 통합(부산민원120) · 접수부서 통합(통합민원담당관) · 콜센터 상담민원 일원화(120콜센터) · 시민의견 통계분석 및 만족도 조사

▷ 시민중심의 민원접수 창구 통합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포털 구축, 시민편의와 효율을 위한 통합 120콜센터 본격 운영('17. 4.)

개선효과

▷ 편리한 민원신청과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피드백)

▷ 모든 시민의 소리에 대한 종합모니터링 및 체계적 관리로 시민소통 강화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개선

추진부서 세정담당관 888-2171

개선배경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민원인이 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구청에서 연계처리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교부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3시간 이내 팩스 송부하는 방식(중계민원 처리방식)으로 발급

▷ 처리기간이 지체되거나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중계민원 처리방식 7단계
· 발급시간 최대 3시간

»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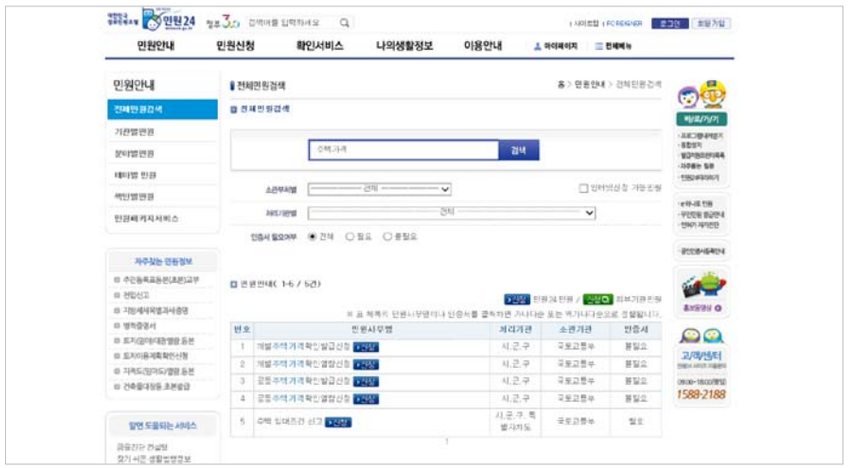
· 중계민원 처리방식 개선 3단계
· 발급시간 1분 이내

▷ 행정의 신속성과 민원 편의를 위해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사무(구·군)를 동 사무에 추가하는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개정(9개구)

▷ 지방세시스템 상 발급권한을 동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민원 신청 시 해당 증명서 즉시 발급 가능

개선효과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및 발급 창구 확대로 민원 불편 해소



3 불합리한 임대료 연체율 인하

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640-7244

개선배경

▷ 식당, 사무실 등 영업 임차인이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료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산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시중 금리보다 높은 최고 15%의 고금리 연체율을 적용하여 시중은행과의 형평성(6~7% 수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과제로 확정·정비

* 과도하게 주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 (연체율)
– 연체기간 1월미만 : 연12%
– 연체기간 1월이상 3월미만 : 연13%
– 연체기간 3월이상 6월미만 : 연14%
– 연체기간 6월이상 : 연15%

»

개선 후

· (연체율)
공사 주거래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율 적용 (6~7%)

▷ 기간에 따른 상향식 고금리 연체율을 일괄적으로 시중금리로 적용하는 재산관리규정 개정('16. 6.) 임차계약** 체결 시 개정된 규정 반영

** 덕포역('16. 8.), 감전역('16. 12.) 인근부지 임대 갱신계약

개선효과

▷ 불합리한 계약 형태 개선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



4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승인 기준 개선

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055-370-0371

개선배경

▷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 승인 시 신청자에게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시설물 사용의 제한과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중지 시 주관적 판단조항으로 자의적 운영의 여지가 있어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사용 승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건 부과 · (사용 제한)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 승인 취소 및 중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 승인) 신청자와 협의, 필요한 조건 부과 · (사용 제한)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한 행사(구체화) · (사용 승인 취소 및 중지) 안전상의 문제발생 가능성(구체화)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과제로 확정, BTC아카데미 시설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16. 8.)

* 과도하게 주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

개선효과

▷ BTC아카데미 시설물 이용 고객과 협의를 통한 조건부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주관적 판단조항의 사유 구체화로 고객과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 해소



<전체시설보기>



5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불공정사항 개선

추진부서 부산시설공단 860-7646

개선배경

▷ 공단 임·직원이 아닌 지하도상가 임차인까지 공단 규정 준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

▷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가임대차 계약 중 발생하는 분쟁 관련 소송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임차인의 준수의무) 조례, 공단 규정, 그 밖의 모든 법규 등 준수 ·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 (임차인의 준수의무) 조례, 그 밖의 모든 법규 등 준수 ·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과제로 확정, 임차인의 준수 의무 중 공단 규정 조항 삭제 및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을 조정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개정('16. 6.)

* 과도하게 주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

개선효과

▷ 임차인과의 공정한 계약체결로 업무 신뢰도 향상



6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추진부서 남구 재무과 607-4152

개선배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분할납부 기준금액)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3월 이내 2회 분납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개선 후

·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만원 초과 : 연 4회 분납

▷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17. 4.)

개선효과

▷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률 증가로 수익 확대 및 주민부담 완화



7 전입신고와 주소변경 등기대행 일괄 처리

추진부서 동구 토지정보과 440-4781

개선배경

▷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개명 및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상의 성명과 주소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의 성명 및 주소지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토지소유자는 등기를 위해 법무사 방문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 가중

개선내용

개선 전

· 전입(개명)신고 후 개인등기

전입 신고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초본 발급 (구청 민원과)
등록세납부서 발급 (구청 세무과)
▼
등록세 납부, 등기수입증기 구입
(은행 방문)
▼
등기신청 접수 (등기소)
▼
등기신청 결과 통지

개선 후

· 전입(개명)신고와 등기대행 일괄 처리

전입 신고시 등기대행 동의신청
(동 주민센터)
⋮
즉시 처리
⋮
등기신청, MMS 결과 알림
(토지정보과)

▷ 전입(개명)신고 시 등기대행 동의신청서 제출로 등기절차 간소화 및 4대 공적장부* 일원화('16. 9.)
*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선효과

▷ 전입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PART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08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09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보강 시스템화

8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추진부서 재난대응과 888-2962

개선배경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보된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시·도 소유 건축물 : 국민안전처, 시·도 산하기관 및 시·군·구 소유 건축물 : 시·도

▷ 최근 잦은 지진으로 시민의 불안감 확대와 지진피해 발생대처방안에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대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 공공건축물*	» ·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 민간소유 건축물

* 지진안전성 표시제 발급현황 : 총 22개소(국민안전처 3, 부산광역시 19)

▷ 지진발생 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7. 2.)

개선효과

▷ 시민의 안전한 대피장소 활용과 불안감 해소로 시민안전 확보





9 공공시설물 조기 내진보강 시스템화

추진부서 기술심사과 888-2514

개선배경

▷ 경주 지진을 계기로 그 간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내진설계* 기준은 있으나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검토할 공종별 체크리스트가 없고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시공자는 설계자 참여 없이 설계도서 검토만 하고 시공하여 내진설계 반영여부 확인 어려움

*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내진설계 반영여부 검토할 공종별 체크리스트 없음 · 설계·시공 분리 발주로 설계자 참여없이 설계도서 검토·시공	· 건설기술심의 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작성·확인 ·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진관리

▷ 건설기술심의 대상의 64%를 차지하는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분야 등에 대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책임실명제)** 제정·시행('17. 3.)

** 분야별 대표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시 적용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160개) 적용

▷ 설계자가 건설기술심의 전 작성(실명기입)·검토하여 발주청 제출

개선효과

▷ 지진 위험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 불안감 해소





PART 3

교육 분야



1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개선

10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개선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1,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610-4422

개선배경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함

*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등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매년 집중 신청기간(3월중)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년간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등이 된 경우 교육비를 제때 지원 받을 수 없어 신청기간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신청기간) – 3월 중	»	· (신청기간) – 3월 중(연중 상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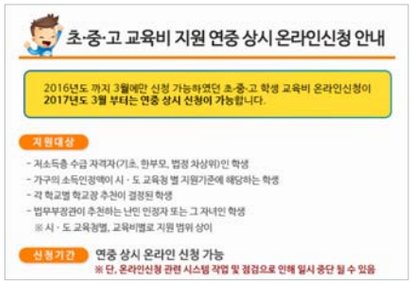
** 방문 신청(학부모) →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구청) → 대상자 결정(교육청)

▷ 부산시 권역별 간담회 과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의('16. 4.),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 개정('17. 2.)

개선효과

▷ 실직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신규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원 누락 방지





PART 4

문화 및 관광 분야

11 문화재 시외반출 가능 및 행정명령 재량권 축소
12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13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
14 낙동강생태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우선사용 개선
15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사용기준 구체화

11 문화재 시외반출 가능 및 행정명령 재량권 축소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888-5062

개선배경

▷ 상위법령 근거 없이 시지정문화재, 시문화재자료, 가지정문화재의 시외 반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문화재 소유자의 불편 초래

▷ 시지정문화재나 시문화재자료의 관리·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범위를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문화재 반출금지 원칙 (단, 향토문화교류 목적으로 허가요건 충족 시 반출가능) · 행정명령 범위 포괄적 규정 (조례 제20조 제1호와 제2호 외에 필요한 조치)	» · 문화재 반출금지 조항 삭제 (시장의 허가로 시외반출 가능) · 행정명령 범위 명확화 (조례 제17조 제1호~제4호만 해당)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16. 6.)

개선효과

▷ 문화재 소유자 불편 해소 및 행정명령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신뢰도 제고



시 유형 제99호 동래향교 고왕록



시 유형 제20호 동파두

12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888-5064

개선배경

▷ 시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문화재 보호지역 주변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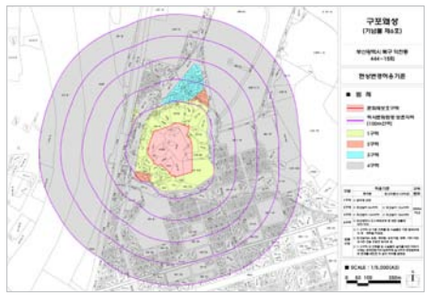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 구포왜성 : 115만㎡ – 경상좌수영성지 : 52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 원지형 보존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 구포왜성 : 68만㎡(47만㎡축소) – 경상좌수영성지 : 48만㎡(4만㎡축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 개별심의(동래읍성지 등 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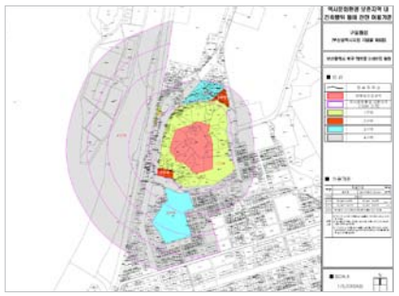
** 건축높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등 규제 있음

▷ 구·군 문화재 전수조사와 문화재위원 현장조사('16. 3.~8.), 의견청취,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형도면 고시('16. 11.~12.)

개선효과

▷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





13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수제한 한시적 완화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12, 관광산업과 888-5215

개선배경

▷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3층 이하의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나 이용객들의 다양한 수요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층수제한 삭제(완화)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

개선 후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18. 6. 30.까지)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등

▷ 행정자치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과제로 선정('16. 2.), 관계부처 협의결과 관광펜션업에 대한 건축물 층수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3→4층, 2년)하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16. 7.)

개선효과

▷ 소규모 관광펜션업 영업자 보호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관광업 활성화 기여





14 낙동강생태공원 체육시설(야구장) 우선사용 개선

추진부서 낙동강관리본부 310-6021

개선배경

▷ 낙동강생태공원의 야구장은 주말 이용률이 높아 일반 이용자들은 추첨을 통하여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구 체육회는 2011년 낙동강관리본부 발족(기존 삼락 및 화명생태공원 :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권 인수) 후 계속 우선 사용함에 따라 일반이용자 불만 가중

▷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우선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임

개선내용

개선 전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이용의 우선 순위) 준용

»

개선 후

·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용의 우선 순위) 해당사항*만 적용

* 국가 및 지자체 행사, 각급 학교의 체육행사, 어린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야구장)에 대하여 공정하게 운영('17. 3.)

개선효과

▷ 조례에 맞는 공공시설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제공





15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부서 부산환경공단 760-3232

개선배경

▷ 하수처리장에 조성된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사용허가(제한)는 부산 환경공단 체육시설 관리규정의 자의적인 해석과 행정 편의적인 모호한 허가 기준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불편 초래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과제로 확정

* 과도하게 주민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사용허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허가 ·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자의적 해석)	· (사용허가) – 우선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 명문화** · (사용제한) – 이용목적 미준수, 경범죄처벌법 해당하는 경우 제한(자의적 해석 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체육진흥행사, 학교주관행사, 청소년대상 행사, 문화 행사

▷ 부산환경공단 체육시설관리규정 개정('16. 8.)

개선효과

▷ 체육시설 이용시민 불편 해소 및 공공서비스 신뢰도 제고





PART 5

환경보호 분야

1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 확대
17 환경친화적(전기, 그 외) 자동차 표지 구분 명확화
18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 등록요건 완화
1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20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21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
22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확대
2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24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25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1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범위 확대

추진부서 기후대기과 888-3575

개선배경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범위 변경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

▷ 자동차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조기폐차 권고

▷ '05년 이전 제작차량의 경우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2.5톤 이하 차량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개선내용

개선 전

· (저공해조치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등록일이 '05. 12. 31. 이전 자동차로서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

개선 후

· (저공해조치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등록일이 '05. 12. 31. 이전 자동차

▷ 자동차 중량 제한규정 삭제로 조기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16. 12.)

개선효과

▷ 경유차 조기폐차 중량 제한규정 폐지로 지원범위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소유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소유자	소유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검사결과 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 사본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확인서	

17 환경친화적(전기, 그 외) 자동차 표지 구분 명확화

추진부서 기후대기과 888-3572

개선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필요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은 제로, 에너지 효율은 엔진차량의 2배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에서 '전기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와 '그 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로 구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차등 제공

* 전기자동차 :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그 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개선내용

개선 전

· 표지 구분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선 후

· 표지 구분
– 전기자동차
– 그 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6. 11.)· 시행('17. 2.),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 2.)

개선효과

▷ 전기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18 지하수 관련 사업자 변경 등록요건 완화

추진부서 환경보전과 888-3644

개선배경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정화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등록은 1개월 이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

▷ 지하수시공업과 유사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등록업체의 경우 변경등록사항은 '대표자'만 해당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변경등록사항) 대표자 또는 임원	»	· (변경등록사항)***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국무조정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16. 3.), 지하수 관련 전문업체 변경등록 사항에서 임원을 제외한 「지하수법」시행령 개정('16. 6.)

개선효과

▷ 지하수 관련 전문업체 변경등록 업무절차 간소화로 사업자 부담 완화





1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추진부서 생활하수과 888-3735

개선배경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원인자부담금)시킬 수 있음

▷ 다른 시·도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건축주 부담 가중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없음	»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준공예정일(산정기준일) 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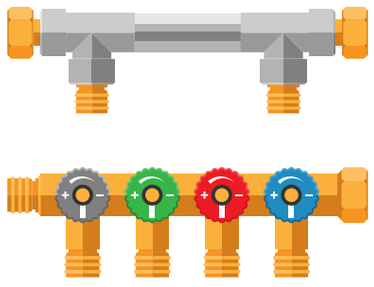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가항목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시행('17. 3.)

**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16개 분야 경제활동별로 조사·분석

개선효과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조항 신설로 민원 편의 제공 및 건축주 부담 완화





20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추진부서 생활하수과 888-3736

개선배경

▷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

▷ 하수도 부지를 점용하여 설치한 건축물 등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의 개별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므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이중 행정 처리로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하수도 부지 점용 시 준공검사 필요	» · 하수도 부지 점용 시 준공검사 불필요

▷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가항목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시행('17. 3.)

*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16개 분야 경제활동별로 조사·분석

개선효과

▷ 하수도 부지 점용자에 대한 점용허가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





21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

추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669-4241

개선배경

▷ 유치원은 초·중등·특수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일부 광역시에서 감면 시행중에 있어 요금 감면 적용의 형평성 보완 및 지역 보편성 적용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없음 – 일반용** 최종 3단계(누진 적용)	» ·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 일반용 최종 1단계(누진 미적용)

** 일반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시행('16. 9.)

* 감면실적('16. 9.~'17. 4.) : 203개소 10,531천원 감면

개선효과

▷ 유치원 운영 부담 일부 해소 및 충분한 수돗물 사용으로 유아 보육 환경 개선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부터 유치원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 누진제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유치원은 사용량과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월)	2017년 적용금액(원)
일반용	1단계	0~50 이하	1,090
	2단계	50 초과 ~ 300 이하	1,180
	3단계	300 초과	1,250

22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 확대

추진부서 상수도사업본부 669-4242

개선배경

▷ 수도요금 자동 납부방법 중 시민편의를 위해 은행계좌 자동납부(자동이체)를 시행하고 있으나 납기일(월말)에 잔고 부족으로 수도요금 미인출 및 연체(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 신용카드 사용 선호에 따른 자동납부 요청고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과다(고지 금액당 2.2%)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기피

개선내용

개선 전

· (납부방법)
  - 자동 계좌이체

개선 후

· (납부방법)
  - 자동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면제 합의 및 ARS 이용 자동납부 접수 시스템 구축('1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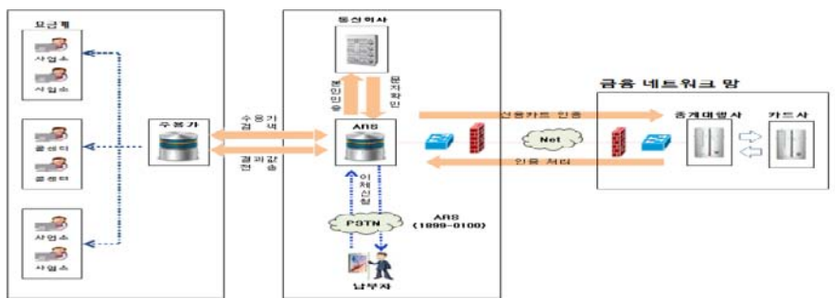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개정·시행('17. 1.)

개선효과

▷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 급증으로 고객편익 증대

▷ 현금 부족으로 인한 체납 및 연체금 발생 예방

▷ ARS시스템 이용 24시간 자동접수 처리로 인력운영 효율화 및 징수율 제고



2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추진부서 중구 환경위생과 600-4384

개선배경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점검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측정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같은 해에 소유자가 또다시 자가측정* 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발생(50~100만원 정도의 측정비용 소요)

* 점검기관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측정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유지기준의 경우 연1회, 우수시설인증 및 권고기준의 경우 2년에 1회 자가측정 실시

개선내용

개선 전

· 점검기관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측정 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같은 해에 소유자가 또 다시 자가측정

개선 후

· 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오염도 측정 시설은 해당연도에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

▷ '14. 하반기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과제로 건의·수용('15. 6.), 점검기관에서 오염도 측정한 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개정('16. 12.)

개선효과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로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24 |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변경신고기한 일원화

추진부서 서구 환경위생과 240-4386

개선배경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폐수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설치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이 공통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을 신고할 경우 배출시설별 신고기한이 「대기환경보전법」은 2개월 이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30일로 서로 달라 일원화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배출시설 변경신고기한 구분
  - 폐수 : 30일
  -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진동 : 2개월

»

개선 후

· 배출시설 변경신고기한 일원화(2개월)

▷ 규정미비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15. 2.)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6. 5.)

개선효과

▷ 배출시설 변경신고기한 일원화로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업무 원스톱 처리





25 | 종량제봉투 가격 및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표시

추진부서 사하구 자원순환과 220-4434

개선배경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조례에 의거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 종량제 봉투는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판매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품목*이나 일부 판매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

개선내용

개선 전

· (종량제 봉투 기재사항)
  판매가격 및 면세품목 미표시

»

개선 후

· (종량제 봉투 기재사항)
  판매가격 및 면세품목 표시

▷ 신규 종량제 봉투 제작 시 판매가격 및 면세품목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봉투 표면에 명시하여 소비자가 봉투 구입 시 비용 과다 지급 방지('16. 9.)

개선효과

▷ 종량제 봉투의 면세품목 안내 및 봉투 구입 시 정확한 가격 정보제공





PART 6

사회복지 분야

26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27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28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29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30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31 출산장려금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26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부서 출산보육과 888-1572

개선배경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상 취약보육의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취약 보육 종류*에 따라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보육까지 확대하여 취약보육에 대한 비용 보조근거 마련 필요

*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

▷ 다자녀가정의 만3~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보육료(월 58~73천원)로 경제적 부담 발생

** 만 3세의 경우 보육료 : 정부지원 어린이집 220,000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293,000원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취약보육 실시비용*** 지원대상) – 영아·장애아 · (보육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취약보육 실시비용 지원대상) – 영아·장애아 –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 (보육료 지원대상) –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자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1명) 인건비 지원 등

▷ 보육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개정('16. 6.)

개선효과

▷ 취약계층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출산장려 기여





27 임산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우선배정

추진부서 출산보육과 888-1566

개선배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고 보육지원제도 차원의 임산부 등 공영주차장 우선 이용방안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주차장 정기권 발행 일반 추첨제

개선 후

· 주차장 정기권 발행면수의 10% 내 임산부 우선 배정

▷ 부산시설공단 직영주차장(18개소 3,776면)의 정기권 발행 시 「모자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장 우선 배정 시행('16. 10.)

* 임신과 관련된 서류 제출 임산부(산모수첩 소지자 등),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육아수첩 소지자)

개선효과

▷ 임산부의 차량이용 편의증진 및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서울경제 2016년 11월 17일 (목) 29B면 전국

부산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임산부에 우선 배정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 직영주차장 18곳에서 정기권 발행면수의 10%를 임산부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권 신청 자격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 분만(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자가운전자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 소유 차량인 경우 동승 임산부도 가능하다. 연간 정기권은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월간 정기권은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모수첩과 육아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온천장역, 명륜역, 중동역, 장산역1, 장산역2, 구서역, 장전역, 남산역, 노포역 등이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10.3 X 6.5 ㎝



28 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허용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1, 노인복지과 888-3276

개선배경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내에는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접객 음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비조리 음식까지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시정권고함

개선내용

개선 전

· 음식물 반입 불가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 제외)

개선 후

· 음식물 반입 허용

▷ 부산시 권역별 간담회 과제('16. 5.)로 변질의 우려가 큰 조리음식의 반입은 식중독 발생 우려 등 감안,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17. 3.)

개선효과

▷ 공설장사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여 시민의 선택권 보장

▷ 사설장사시설의 음식물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외부음식 금지' 조례, 사설 장례식장서 악용

공설장례식장만 적용되지만 경쟁없는 틈 타 막무가내 횡포

- 해결책은 공정위 신고 분

정모(57) 씨는 최근 부친상을 치르며 장례식장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식육업을 하는 정 씨는 자기가 취급하는 고기를 조문객에게 대접하려 했지만, 장례식장 측에서 이를 강하게 막아선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장례식장 측의 요구에 응한 정 씨는 결국 시중가 70만 원 상당의 질 낮은 돼지고기를 130만 원에 구매했다. 정 씨는 "장례식장 측이 부산시 조례를 들먹이며 반입을 금지했다. 업주와 상주가 협의하면 외부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던데,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최모(46) 씨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다. 모친상을 당해 직장에서 조문객 대접용 과일과 음료를 보내왔지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 씨는 "식중독 발병 우려를 이유로 금지했다.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29 공설묘지 등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16, 노인복지과 888-3276

개선배경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묘지나 봉안시설 사용 중 개인적 사유로 해지 시 묘지·봉안시설 특성상 재사용하지 않는 풍습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음

* 영락공원(봉안당, 공원묘지), 추모공원(봉안당, 가족봉안묘, 봉안담)

▷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권고사항임

개선내용

개선 전

· 사용 전 반환
  - 가족봉안묘, 봉안담

개선 후

· 사용 전, 사용 중 모두 반환
  - 가족봉안묘, 봉안담, 봉안당, 묘지

▷ 온라인민원 전수조사 결과('16. 6.~7.) 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사례 관련 생활규제 과제로 선정('16. 9.), 장사시설 사용 중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급하되, 장사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위약금(10/100) 공제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반환하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17. 3.)

개선효과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민원 해소 및 권익보호로 시민 장사서비스 제고





30 영락공원 표준장례비 서비스 제공

추진부서 부산시설공단 790-5034

개선배경

▷ 평소 장례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만 조사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정보 습득 곤란

▷ 장례비용 산출을 위해 유족이 직접 영락공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장례비용 산출 시 전화 또는 방문 문의

개선 후

· 홈페이지를 통한 표준 장례비* 확인 및 장례비용 산출 가능

* 영락공원에서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경우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도 표준안에 따라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

* 영락공원 표준 장례비 : 약 270만원(화장·봉안 포함 시 315만원) 전국 평균 장사비용의 1/4수준

▷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장례비용 산출 가능('16. 7.)

개선효과

▷ 장례비용 산출시스템을 통한 장례식장 예상비용 사전인지 가능

▷ 공설 장례식장의 합리적인 장례비용 제시로 유족부담 경감 및 장례문화 선도





31 출산장려금품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추진부서 남구 주민복지과 607-4354

개선배경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둘째 이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는 둘째이후 출생아에 한정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지원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지원기준) 둘째 이후 출생아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거주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부터 30일 이내

»

개선 후

· (지원기준) 구분 없음(모든 출생아)
·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금품 지원 조례 개정 ('16. 9.)

개선효과

▷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PART 7

보건 분야

32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3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설정
34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32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추진부서 보건위생과 888-3391

개선배경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합법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 10. 개정)후 영업장소를 공용재산(공공기관) 등으로 확대('15. 10. 개정)하였으나 장소 등의 제한과 법적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창업이 부진함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장소* 확대 및 창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방안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영업장소) –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8개소)	· (영업장소) – 기존 8개소 외 5개소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공공기관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추가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시 및 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16. 12.)

개선효과

▷ 영업장소 확대와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 도모





3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기준 설정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5, 보건위생과 888-3416

개선배경

▷ 병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토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음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금액 부과를 막기 위하여 상한기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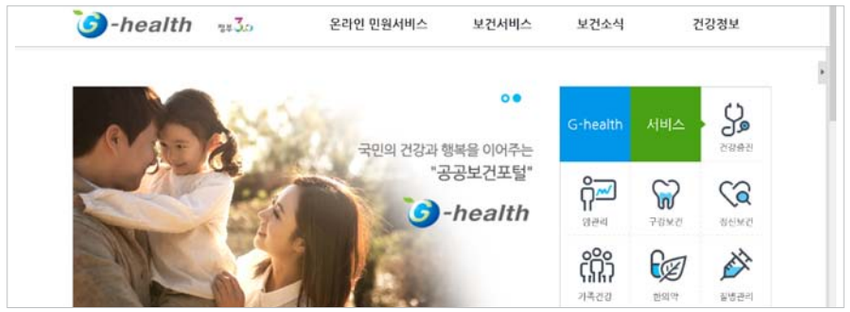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없음	·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보건복지부)

▷ 부산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15. 8. 19.~'15. 10. 2.) 제안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개정건의('15. 11.),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법」개정('16. 12.)·시행('17. 9.)

개선효과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민원 감소 및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제고





34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추진부서 부산진구 관광위생과 605-4425

개선배경

▷ 부산진구는 부전동 지역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기타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 법규 위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영업규제 완화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허용지역) 부전동 일반상업지역 · (시설기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1층)	· (허용지역) 관내 일반상업지역 · (시설기준) 건축물 대지 내 지상(1층) 및 2층 이상 공지(단, 옥상 제외)

▷ 옥외영업 허용지역 및 시설기준을 확대하는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개정고시('16. 6.) * 옥외영업 일부허용(7개 구) :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개선효과

▷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 해소 및 위생적 관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부산일보

2016년 06월 17일 (금) 09면 사회

전포카페거리 '테라스 영업' 추진한다

부산진구청 '옥외영업' 개정
현재 허용 지역 규모 조율
이국적 풍경 연출 명물 기대

부산 도심 속 이색거리로 자리매김한 '전포카페거리'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외부 테라스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전포카페거리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시설 기준 특례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포카페거리는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1번가 맞은편에 개성 있는 카페 수십 곳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외지에서 온 관광객도 한번씩 방문해보는 곳이다.

부산진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기준을 명시한 현행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시설 기준 특례 고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진구 내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부전동 일대 일반상업지역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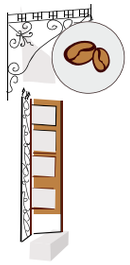
특례 고시가 개정되면 전포카페거리의 가게들은 1층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테라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구청은 전포카페거리를 포함해 옥외영업 허용 지역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허용 지역이 결정되면 구청은 자체적으로 고시 문안을 작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시 공고를 한 후 이르면 8월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지면 전포카페거리는 테라스를 활용한 이국적 풍경 연출이 가능해져 또 다른 관광 명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인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옥외영업이 허용된 서면이나 광안리 일대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자신해부터 서면 일대에 옥외영업이 실시되면서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포카페거리에 외부 테라스 영업으로 독특한 분위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기자 moon@

25.6 X 8.9 cm







PART 8

농림해양 수산 분야



35 유휴항만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36 선박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37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38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기준 완화
39 마리나업 등록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허용
40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41 양식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완화

35 유휴항만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추진부서 해운항만과 888-5284

개선배경

▷ 북항 일원 부두시설 컨테이너 화물처리 기능이 부산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항만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유휴항만 발생

▷ 「항만법*」상 컨테이너부두 이전으로 발생된 유휴항만지역에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 등 기업유치가 불가능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어려움

* 항만재개발사업은 가능,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시행 중(1~4부두)

개선내용

개선 전

· 유휴항만지역에 해양산업 및 연관 산업 기업유치 불가능

개선 후

· 유휴항만 활용한 해양산업 관련 기업유치 가능(해양산업클러스터**)

**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65호, '17. 4.)에 부산항(우암부두) 포함

▷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방안 수립(부산발전연구원, '13. 2.), 시의 적극 건의로 해양수산부 현안사업으로 선정('13. 3.)·국회 등을 방문, 시 의견을 개진한 법안 발의('14. 3.)

▷ 시 전담조직 신설('15. 1.) 선제적 대응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합의, 수정대안 최종마련('15. 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6. 5.)

개선효과

▷ 기존 항만 인프라가 필요한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 융복합화 및 시너지 효과로 북항을 클러스터 중심 해양산업 국가선도 전략거점으로 육성, 국가 해양경제력 강화





36 선박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추진부서 해운항만과 888-5324

개선배경

▷ 선박수리업은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조선기자재, 선용품 산업 등 전후방 효과도 큰 산업임

▷ 선박수리업은 수리업(코드 95119)으로 간주되어 RG*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조업 지원정책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 애로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

개선내용

개선 전

· 선박건조업(코드 3111)
  -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활동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코드 95119) : 서비스업으로 분류

개선 후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코드 3111)
  -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산업활동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코드 34019) : 제조업으로 분류

▷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안건상정(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16. 12.)으로 선박수리업을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의견 제출('16. 12.), 제10차 개정고시('17. 1.)·시행('17. 7.)

개선효과

▷ 제조업 지원정책(RG 발급 등) 혜택으로 선박수리업 활성화 계기 마련





37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추진부서 해운항만과 888-5321

개선배경

▷ 국내에서 승선한 국제순항 크루즈선* 승객은 승선 시 출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승선허가)하여 국내 타 기항지(최종항에서 출국심사)에서 하선을 금지함에 따라 크루즈 모항 육성에 한계

*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 크루즈선 중 국내항을 2곳 이상 기항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 승객의 국내 타 기항지에서 관광을 위한 국내항간 승하선 절차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금지	· 국제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 규제프리존 개선과제로 건의('15. 12.)하여 크루즈선 승객의 국내항간 승하선 절차 개선·시행(법무부, '16. 4.)

▷ 최초 승선지에서 승선신고를 받아 국내 최종항 입항할 때 관광 등을 위한 하선을 허용하고 출항 시 출국심사

개선효과

▷ 국내 크루즈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38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기준 완화

추진부서 해양레저과 888-5362

개선배경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신설('15. 7.)되었으나 등록기준이 5톤 이상 마리나선박*에 한정되어 있어 고가의 선박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 발생 및 마리나 산업 육성에 한계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등

▷ 실제 레저용 요트는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은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 서비스산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 5톤 이상 마리나선박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 2톤 이상 마리나선박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발의('16. 3.)에 따라 우리시 지역전략산업인 해양관광분야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건의, 경제부총리 현장방문 간담회('16. 3.) 등 노력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16. 12.)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대수 : 1,006척

개선효과

▷ 등록가능 대상선박 증가(3배, 3,235척 예상), 마리나대여업 중심의 서비스업 활성화





39 마리나업 등록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허용

추진부서 해양레저과 888-5362

개선배경

▷ 해양관광, 레저분야의 중요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리나업*은 민간사업자 창업 시, 고가의 레저용 선박 구매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에도 유사 업종인 유람선업, 크루즈업과 달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가 불가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 저해

* 마리나선박 대여, 마리나선박의 보관 · 계류에 필요한 시설 제공,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전국 64개 업체, '16. 7.현재)

개선내용

개선 전

· 마리나업 등록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불가

개선 후

· 마리나업 등록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가능

▷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발의('16. 3.)에 따라 해양관광분야 규제특례 과제로 발굴건의('16.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한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리 및 운영요령(문화체육관광부) 개정('16. 8.)

개선효과

▷ 마리나업 등록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창업 수요증가 및 마리나 항만개발, 마리나 서비스산업, 레저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선순환적 경제효과 기대





40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추진부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220-8817

개선배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 도매시장 내 법인은 도매시장 법인업무 이외 겸영사업*이 가능하여 현재 수출입업을 겸영 중에 있으나, 해외현지 중개거래는 불가하여 국내에 반입(도매시장 상장) 후 재수출함에 따라 불필요한 운송비 발생 등 경쟁력 저하

*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보관·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

개선내용

개선 전

· 도매시장법인 수출입업 겸영사업 추진 시 해외현지 중개거래 불가

연어 구매 위탁 (외국 바이어) → 현지조사 (법인) → 러시아연어 1,000톤 현지 구매 (법인) → 수입(법인) ⇄ 대금 지급 → 국가별 분배 (미국, 일본, 중국 등) → 수출(법인) ⇄ 대금 지급 → 국가별 연어 수령 (외국 바이어)

개선 후

· 도매시장법인의 수출입업 겸영사업은 중개거래 포함

연어 구매 위탁 (외국 바이어) → 현지조사(법인) → 러시아연어 1,000톤 현지 구매 (법인) → 현지 분배 후 운송 ⇄ 대금 지급 → 국가별 연어 수령 (외국 바이어)

▷ 행정자치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과제로 선정('16. 2.), 관계부처 협의결과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수출입 및 배송사업 범위에 국외 중개거래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통보('16. 7.)

개선효과

▷ 해외 판매자들과의 외연확대를 통한 국외 물량유치 역량 제고

▷ 운송비 절감 및 신속한 수산물 수출입업 추진으로 도매시장 법인 매출 증대





41 양식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완화

추진부서 강서구 해양수산과 970-4481

개선배경

▷ 「수산업법」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선(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05년 고시*에는 1ha미만은 관리선 지정이 불가하고 어장면적이 늘어나도 최대척수가 명시되어 추가 지정을 할 수 없어 어업인 불편 초래

*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관리선의 척수 고시(강서구 고시 제2005-16호)

개선내용

개선 전

· (해조류 양식어업 관리선 척수기준*)
- 18책**(1ha)~36책(2ha) 미만 : 1척
- 36책(2ha)~100책(5ha) 미만 : 2척
- 100책(5ha) 이상 : 3척

개선 후

· (해조류 양식어업 관리선 척수기준)
- 0.5ha~2ha 미만 : 1척
- 2ha~3ha 미만 : 2척
- 3ha~5ha 미만 : 3척
- 5ha 이상 : 4척

** 김양식 시설의 단위이며, 1ha안에 설치 가능한 김양식 시설은 18책 정도

▷ 어장관리선 지정 가능한 최소면적(18책 → 0.5ha)과 최대지정 가능척수(3 → 4척)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16. 12.)

개선효과

▷ 효율적인 어장관리 및 적기 조업으로 작업시간 절약 등 어업인 소득 증대





PART 9

산업·중소기업 분야

42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녹산산단 입주허용
43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
4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45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획지 및 유치업종 변경
46 사도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자 부담 완화
47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48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49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50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일원화

42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녹산산단 입주허용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1, 강서구 환경위생과 970-4384

개선배경

▷ 사상구 학장동 소재 코발트 제조업체(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가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사업 확장을 위해 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입주문의를 하였으나 산단관리기본계획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입주 불허함에 따라 기업이전 애로

*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

개선내용

개선 전

· 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입주제한 업종으로 입주불가

개선 후

· 산단관리기본계획 단서조항** 반영 입주허용

**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허용 가능

▷ 부산일자리위원회 현장토론회 건의('15. 9.)사항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완료 후 관련기관(시, 구, 산단공) 실무회의를 거쳐 환경인허가기관(강서구)의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신고수리 가능 회신 ('16. 5.)으로 산단관리기본계획 단서조항 반영

개선효과

▷ 기업의 경영활동 적극 지원으로 투자비 25억원, 추가고용 10명 창출예상





43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 자격요건 완화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12

개선배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내 공장부지 임대사업은 실수요자인 제조업체만 가능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산단 내에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추진 불가능

*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 매매계약 등으로 인수하여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비슷한 유형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부지 임대사업이 가능하나 산단에서는 불가능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 캠코의 산단 내 임대사업 불가

개선 후

· 산단 내 임대사업 가능

▷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개선과제로 캠코가 산단 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16. 5.)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개정('16. 12.)

개선효과

▷ 산단 내 기업의 산업용지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경영난 해소





4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추진부서 좋은기업유치과 888-4454

개선배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집중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보조금(건물매입비, 건물임차료 또는 시설·장비설치비 중 일부 보조금 지원) 지원규정이 신설('15. 11.)되었으나 기업유치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업종 확대 필요

*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전자상거래업 등)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지원업종) – 전자상거래업, S/W개발 및 공급업, 영화·영상, 연구개발업 등 10개 업종	· (지원업종) –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34개 업종 전체

▷ 시역 안으로 이전(확장)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업종 확대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시행('17. 7.)

개선효과

▷ 도심지역 내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고부가 지식서비스기업 적극 유치 가능 기대



부산, 국내 복귀·지식기반서비스 기업 보조금 확대

복귀기업은 입지보조금 등 까다로운 기존 지원조건 완화
지식기반, 34개 전업종 확대

부산시는 7월부터 국내 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부산으로 돌아올 경우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만든 것은 정부가 지난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했으나 지원조건 등이 까다로워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제도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와 유턴기업 협약을 체결한 17개사 중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 가운데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원제도는 까다로움을 기존의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투자사업 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을 부지매입비의 10%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은 설비투자비의 14%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고용인센티브를 적용, 추가 지원도 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종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여성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큰 금융·보험 및 콘텐센터 등 첨산업 서비스업이 이전·확장할 경우 고용보조금까지 확대지원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의 경우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가 지체적으로 보유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게 특화된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l7304@fnnews.com 권경석 기자

2017년 06월 09일 (금) 19면 부산/울산/경남

국제신문

내달부터 부산 이전 역외기업 보조금 확대

국내 복귀기업·지식서비스기업
부지매입 비용 최대 5억 원
건물 임차료 50% 등 지원 계획

다음 달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는 역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는 국내 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투자진흥기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타당성 평가 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업의 경우 부지매입비의 10% 범위 이내(5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설비투자비의 14% 범위(10억 원 한도) 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확대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 및 보험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 또는 사업 확대 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경우 건물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설비 보조금은 비용의 30%까지 지급된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45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획지 및 유치업종 변경

추진부서 좋은기업유치과 888-4452, 연구개발과 888-4514

개선배경

▷ 가구 및 홈인테리어 업체는 부·울·경, 호남권 지역의 주거 환경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부산 신항을 통한 원자재 등 수입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일원(i50)에 공장 및 물류센터 구축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용도 구분* 등이 특구관리계획과 배치되어 산단계획 변경 승인불가 입장으로 기업 애로

* 토지(i50)의 용도 변경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획지) i5-2, i5-3, i5-4 구분 · (업종) 메카트로닉스	· (획지) i5-2(A=39,689㎡) 통합 · (업종) 물류운송

▷ 부산시가 사업 적정부지를 국제산업물류도시i50에서 i5(산업육성구역)로 변경·추천, 획지와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청, '16. 11.) 및 입주계약 체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6. 12.)

개선효과

▷ 일자리 700여명 창출 및 신항 물동량 월 500TEU 증가, 부산기업 제품 납품기회 증대



46 사도 관련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자 부담 완화

추진부서 에너지산업과 888-4694

개선배경

▷ ㈜부산도시가스는 사도(私道)에 설치되는 공급관에 대하여 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설치토록 하고 있어 최초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은 신규 수요자가 기 설치된 공급관을 이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기존 설치자와의 갈등 발생

▷ 다른 시·도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에는 사도에 관한 내용과 공급관 설치 공사비에 관하여 '수요자와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 없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공급관) – 공도는 도시가스사, 사도는 수요자 설치 · (인입배관) – 공도는 도시가스사, 수요자 각 50% – 사도는 수요자 100% 부담	· (공급관) – 공도·사도 모두 도시가스사 설치 · (인입배관) – 공도·사도 모두 도시가스사, 수요자 각 50% 부담

▷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안건상정('16. 12.)으로 공급관의 경우 도시 가스사가 전액 설치비 부담,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 50%씩 부담·설치하도록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승인('16. 12.)

개선효과

▷ 서민의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





47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추진부서 연구개발과 888-4514

개선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함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96호, '15. 12.)로 특구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이 결정됨에 따라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연구소 등 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주거구역, 상업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 부산연구개발특구(14.104㎢) :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80% 이하	·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120% 이하

▷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7. 3.)

개선효과

▷ 자연 속에 교육 및 연구시설의 집중배치로 연구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기여



경향신문 2017년 04월 03일 (월) 14면 전국

부산, 자연녹지 내 학교·공장 신·증축 완화

부산의 자연녹지에 들어선 학교 건물의 건폐율이 완화되고 녹지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 완화 기한도 연장된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녹지 내 학교 및 기존 공장의 증축을 쉽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먼저 자연녹지 내 학교 건물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20% 이하에서 30%로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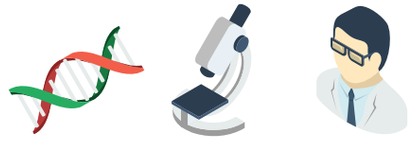
녹지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도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내자연녹지에서 교육·연구시설이나 사업화 시설을 지을 때 기존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를 각각 1.5배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10.4 X 9.3 cm





48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추진부서 영도구 해양수산과 419-4452

개선배경

▷ 부산 동삼동 패총(사적 제266호) 문화재 보존지역에 위치한 '동삼하리지구' (23,670㎡)를 상업, 관광, 문화, 호텔, 컨벤션 등 다양한 테마와 첨단 건축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건설할 계획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개발사업지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투자자 모집에 난항

개선내용

개선 전

· (허용기준 : 평지붕 기준)
- 3-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3-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6m이하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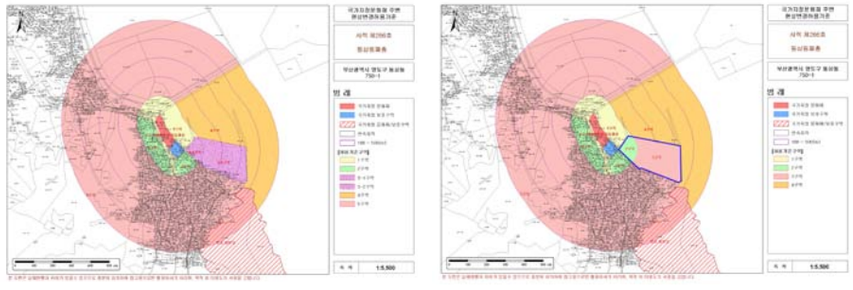
· (허용기준 : 구역* 및 높이 변경)
-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3구역 : 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3-1구역을 2구역에 포함 / 3-2구역, 5구역을 3구역으로 함(문화재청 고시 제2016-49호)

▷ 동삼하리 개발사업 구간을 정부의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 지역발전위원회에 건의('16. 1.),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방문·설득하여 사적 제266호「부산 동삼동 패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고시('16. 6.)

개선효과

▷ 동삼동 패총, 태종대 유원지, 국립해양박물관 등 인접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발전 촉진



49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추진부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과 749-2902

개선배경

▷ 해운대창조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만 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는 대표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있으면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직원을 채용하려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야 하므로 1인 창조기업의 화장품 유통업 진입 어려움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개선내용

개선 전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대표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경우 제조판매업 등록(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갖춘 직원 채용 가능)

개선 후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하 기업 대표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춘 경우 제조판매업 등록(직원 채용 가능)

▷ 국무조정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16. 3.)되어 기업의 고용부담을 고려한「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16. 6.)

개선효과

▷ 10인 이하 영세기업의 화장품 유통업 진입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50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일원화

추진부서 강서구 기획감사실 970-4012

개선배경

▷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구청에서 수행하던 건축허가·환경 영향평가·폐기물처리 등의 사무(22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

▷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곳*의 경우 해당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련성이 적고 동일 행정구역 내 행정기관 이원화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로 민원불편 초래

* 화전지구, 신호지방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등 7개 지구(산업단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이원화 – 도로, 환경 등 관리업무 : 지자체 – 각종 인·허가 :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 일원화(지자체) (단, 개발이 완료된 곳에 한하여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개발사업 완료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 불필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 고유사무 환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국회의원 지속방문 설득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16. 12.)·시행('17. 6.)

개선효과

▷ 처리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주민·기업의 불편 해소 및 기업투자유치 주력



부산일보 2016년 11월 18일 (금) 04면 정치

경제구역 관할권 일부, 지자체로 환원

행정업무 이중 처리 등 개선
화전지구·신호산단 등 혜당

경제자유구역 중 일정 수준 이상 개발 및 투자가 완료된 지구의 해당 사무 관할권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원된다.

국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목적에 따라 법적 지위는 유지하되 지자체 고유사무를 환원하는 출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 제도 하에서는 지자체 고유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처리해옴에 따라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 이원화(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로 인한 처리기관 이중 방문, 복합행정 수요 대처 미흡으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 발생 등 주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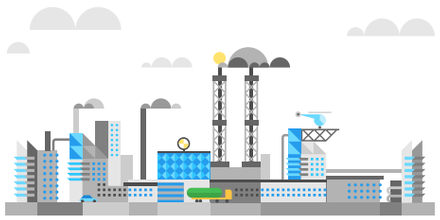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화전지구(248만 8000㎡), 신호지방산업단지(125만 1000㎡), 서부산유통지구(82만 8000㎡)가 출입제도의 수혜를 입는 첫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지자체 고유사무가 다시 지자체로 환원되면 그동안 주민과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 등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치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고유사무인 건축허가, 부동산·농지전용 신고, 공장설립 등록 등 22개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여 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시·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gh21@

12.7 X 16.0 cm





PART 10

수송 및 교통 분야

51 문현동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확장
52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 및 운휴일 명확화
53 교통신호기 입찰참가자격 완화
54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명확화

51 문현동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확장

추진부서 도로계획과 888-2736, 남구 건설과 607-4694

개선배경

▷ 문현동 철도용지(국유지 : 기획재정부)는 석탄 운송용 철도로 사용(1960년대) 하다가 최근 이용자체가 없어 도심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다가 국유지 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폐철도 철거('16. 11.)

▷ 철거 작업 이후 정비 미흡으로 주민 불편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 도시미관 저해 특히, 폐철도 부지로 인한 도로 선형이 기형적이고 이로 인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개선내용

개선 전

· 폐선부지(3,073㎡)

개선 후

· 도로정비(L=650m)
  - 차로확장(L=400m, B=3.5m)
  - 보도신설(L=250m, B=3m)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접도로와 함께 도로확장·포장 등을 할 경우 매수 요청하면 매각* 가능함을 회신('17. 3.)하였으나,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기관(조달청)을 적극 설득·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국유지 무상귀속으로 도로 정비 추진('17. 4.)

* 토지매입비 20억원 소요 예상

개선효과

▷ 폐철도부지를 도로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52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 및 운휴일 명확화

추진부서 교통운영과 888-3904

개선배경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승용차부제* 등 교통수요관리

*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

▷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 관광통행이 확대됨에 따라 요일제 위반 및 해지자 증가로 가입률(17%)이 정체 상태이므로 승용차 부제 운영시간과 운휴일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란 방지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운영시간과 운휴일 규정 없음

개선 후

·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운휴일)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개정·시행('16. 8.)

개선효과

▷ 시민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의욕 고취 및 시민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53 교통신호기 입찰참가자격 완화

추진부서 교통운영과 888-3944

개선배경

▷ 교통신호기 보수·설치 연간단가공사의 경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신호·연동장치 공사 등은 단가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두고 있음

* 교통신호 연동화구간 내에서 교통신호기를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3대 이상 설치·교체·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일반업체가 실적을 보유하기 힘든 상황에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입찰 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부산 등록 전기업체 800여개 중 100여개 업체만 입찰 참여(부산, 울산만 실적제한)

개선내용

개선 전

·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개선 후

·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삭제

▷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건의사항으로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16. 12.) 안건으로 상정하여 '17년 교통신호기 보수·설치 연간단가공사 실적 제한 삭제 발주('16. 12.)

개선효과

▷ 모든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제공



54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명확화

추진부서 교통관리과 888-4016

개선배경

▷ 「주차장법」에는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면여부, 감면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등 주민 불편 발생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개선내용

개선 전

·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규정 없음 (실제 감면 적용)

개선 후

·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율 명확화 (조례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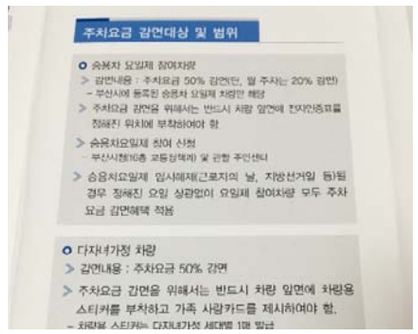
▷ 법제처 규제개선 50선에 수록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16. 9.)

개선효과

▷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운영 근거 마련

▷ 경형자동차 구입 인센티브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유도





PART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56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부서 일원화
5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차장 입지기준 삭제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59 일반주거지역(제2·3종)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
60 시민안전을 위한 공중선 정비체계 개선
61 유아숲지도사 배치 근거 마련
62 도시공원 및 낙동강생태공원 야외결혼식 허용
6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64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범위 확대
65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지침 개선
66 공개공지 설치 기준 완화
67 건축허가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 폐지
68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로 지역상권 활성화
69 지역여건에 맞는 주유소 배치계획 재정비
70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 폐지

5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기간 단축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2, 건축주택과 888-4285

개선배경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접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부산)에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시스템 미비로 처리기한 내 협의회신이 어려워 민원처리기간 미 준수 등 건축주 불만 증가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개선내용

개선 전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처리과정 4단계, 7일 소요

개선 후

· 건축행정시스템 활용 처리과정 2단계, 2일 소요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건의사항으로 구·군 사례조사('16. 8.) 및 관련 기관·부서 실무자 회의('16. 9.) 결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버 협의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건축협의 일원화('16. 10.)

개선효과

▷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56 건축물대장 생성(관리) 부서 일원화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2, 건축주택과 888-4284

개선배경

▷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생성함으로써 등기가 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부여되나 건축물대장의 생성과 발급부서의 이원화로 근저당 등 재산권 행사를 제때에 할 수 없어 민원 불편 초래

▷ 건축물 사용승인부서(건축부서)에서 직접 생성 시 1일 소요, 건축물대장 발급부서(지적부서)에서 생성 시 협조 등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일~여러 일 소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건축물대장 생성 부서 이원화
  - 건축부서 : 7개 구·군
  - 지적부서 : 9개 구

개선 후

· 건축물대장 생성 부서 일원화
  - 건축부서 : 15개 구·군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건의사항으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16. 8.)와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16. 12.) 안건 상정, 건축물대장 생성 업무 건축부서로 일원화('16. 12. ~ '17. 3.)

개선효과

▷ 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민원인의 조기 재산권 형성에 기여

▷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는 처리로 책임 행정 구현



57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차장 입지기준 삭제

추진부서 도시계획과 888-2472

개선배경

▷ 주거지역 내 주차장 부족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른 주거지역과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주차장 입지 기준을 규제하고 있어 완화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구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선내용

개선 전

· (입지기준)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

개선 후

· (입지기준)
  삭제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대한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7. 1.)

개선효과

▷ 주거지 내 주차장 확충으로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시민편의 증진





58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추진부서 도시계획과 888-2472, 규제개혁추진단 888-1222

개선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조례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제한

▷ 용도지역 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용적률 활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 용적률 220퍼센트 이하 (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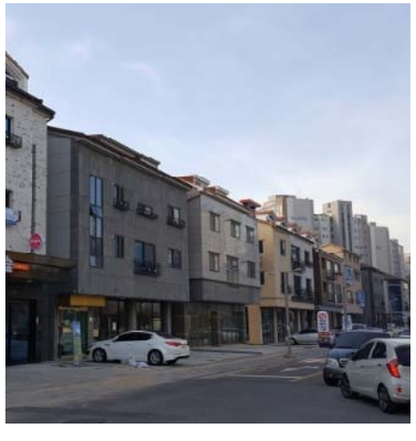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필지 중 1천제곱미터 이상 필지는 4%에 불과

▷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15. 10.) 안건상정 및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발굴안건(부산시건축사회, '16. 3.)으로 용적률 상향(200 → 220%)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7. 1.)

개선효과

▷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여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59 일반주거지역(제2·3종)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 완화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16, 도시계획과 888-2472

개선배경

▷ 민원인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입지 제한으로 사업 보류(인터넷 민원 제기)

▷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한적인 일반주거지역 내 운동시설* 입지기준(도로 및 대지 기준 제한) 완화 필요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운동시설 입지기준) 도로 및 대지 기준** 제한	· (운동시설 입지기준) 도로 및 대지 기준 삭제

**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 온라인민원 전수조사 결과('16. 6.~7.) 부서 협의를 거쳐 생활규제 개선과제로 선정('16.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7. 3.)

개선효과

▷ 주거지역 내 다양한 운동시설 입지로 창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





60 시민안전을 위한 공중선 정비체계 개선

추진부서 도로계획과 888-2734

개선배경

▷ 최근 초고속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과다·난립, 난립된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규정에 맞지 않은 공중선 설치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전주*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대

* 전주 설치 현황(한전, KT, LGU+ 등) : 268,595기 39,637㎞

▷ 통신업체 자율 공중선 정비로는 도시미관 개선 효과 미흡, 체계적인 관리 부족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공중선 난립



개선 후

· 공중선 일원화



▷ 부산시 공동주 직접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중선 시범 정비('16. 11.~'17. 1.)

개선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기여로 도시미관 개선





61 유아숲지도사 배치 근거 마련

추진부서 산림녹지과 888-3851

개선배경

▷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에 유아 숲 체험장을 운영하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유익한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지도사** 의무 배치 필요

* 숲해설가 :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유아숲지도사 :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개선내용

개선 전

· 체험장*** 내 유아숲지도사 배치근거 없음

개선 후

· 체험장 내 유아숲지도사 1명이상 배치 의무

*** 유아 숲 체험장(화명수목원 및 엄광산, 백양산 등 31개소) 중 유아숲지도사는 1명 배치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17. 4.)

개선효과

▷ 유아 숲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배치를 통한 산림교육으로 산림복지 실현





62 도시공원 및 낙동강생태공원 야외결혼식 허용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16, 공원운영과 888-3795, 낙동강관리본부 310-6021

개선배경

▷ 특색 있고 합리적인 결혼식 선호 추세에 따라 야외 결혼식* 수요 증가로 예식공간으로 도시공원이 부각되고 있으나 예식장 설치 및 상설화는 불가

* 야외결혼식 장점 : 주로 1일 1예식으로 진행되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객들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특색있는 연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합리적임

개선내용

개선 전

· 야외결혼식 불허

개선 후

· 야외결혼식 허용 (사용허가** 신청 시)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시사용, 1일 330㎡당 12,000원)
낙동강생태공원 :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온라인민원 전수조사 결과('16. 6.~7.) 부서 협의를 거쳐 생활규제 개선과제 선정('16. 9.),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식행위를 허용하는 도시공원 내 작은 결혼식 허용방안 마련·시행('16. 10.)

▷ 낙동강생태공원의 이용시설(조경시설) 허가신청 시 결혼식 허용('17. 2.)

개선효과

▷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복지서비스 제공





6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추진부서 도시정비과 888-4252

개선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시장은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함

* 정비사업 추진과정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 추진위원회 구성 시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 및 불투명한 추진위 운영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조합설립 지원기준 고시 내용이 없음

개선내용

개선 전

·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개선 후

·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설립

▷ 공공지원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 기준 제정·고시('17. 1.)

개선효과

▷ 조합 설립은 빠르게, 비용은 경감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원주민 정착률 제고 및 대시민 행정신뢰 제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간단해진다

현 8단계서 7단계로 조정
부산시 간소화 방안 추진

운영비 부족에 사업 '발목'
'추진위 구성' 단계 빼기로
내년 2분기께 도입 예정

부산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절차가 간단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의 전 단계인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총 8단계인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7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에 고시하고, 내년 2분기께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시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추진위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정비업체 선정 등을 거쳐야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시와 구·군 조사 결과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 단계에서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이 추진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조합 설립인가 등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시내의 조합은 총 61개(재개발 51개, 재건축 10개·2016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부산시 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제외)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시는 관련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시내 1000세대 이하 규모의 단지로 대상 조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중 사업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조례도 시행 중이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가 매몰 비용의 최대 70%까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해 현재 시행 중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64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범위 확대

추진부서 도시정비과 888-4234, 규제개혁추진단 888-1212

개선배경

▷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부진함에 따라 대안적 정비 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12. 8.)되었지만 부산시의 경우 산지가 많은 입지여건으로 해당 법령에 적합한 사업대상지(가로구역) 발굴이 어려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애로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에 둘러싸인 면적이 1만㎡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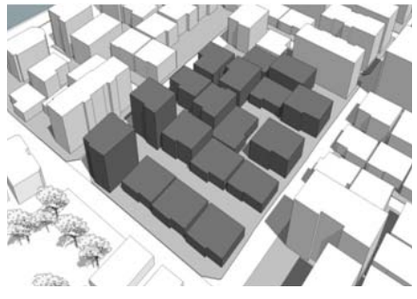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가로구역의 범위)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 (일부 광장 등)에 둘러싸인 1만㎡미만 지역	· (가로구역의 범위)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 (일부 광장, 너비 6m 이상 건축법상 도로 등)에 둘러싸인 1만㎡미만 지역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선정, 국토교통부에 해당 법령 개정 건의로 도시계획도로 외에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16. 7.)

개선효과

▷ 가로구역 조건 완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65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지침 개선

추진부서 건축주택과 888-4291, 규제개혁추진단 888-1222

개선배경

▷ 「건축법」에 따라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부산시 고시 제2015-63호)·운용하고 있음

▷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외에 개별 법령에서도 완화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산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에는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용지침이 법령의 완화 규정을 제한하는 모순으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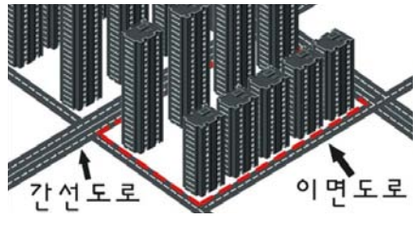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높이 초과(조항 삭제) 가능

▷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발굴안건(부산시건축사회, '16. 3.)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운용지침 변경공고('17. 2.)

개선효과

▷ 법령에 맞지 않는 지침 변경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행정신뢰도 향상





66 공개공지 설치 기준 완화

추진부서 건축주택과 888-4294, 규제개혁추진단 888-1222

개선배경

▷ 「건축법」에 따라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긴의자, 파고라 등)은 건축조례로 정하나 부산시 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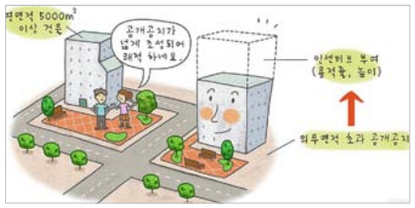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공개공지 설치 기준 – 1개소 면적 45㎡ 이상 –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6m 이상	»	· 공개공지 설치기준 삭제

▷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의 발굴안건(부산시건축사회, '16. 3.)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시행('16. 12.)

개선효과

▷ 공개공지 내 설치시설의 시공 용이 및 안정성 확보, 건축주 부담 경감





67 건축허가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 폐지

추진부서 건축주택과 888-4294

개선배경

▷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업무대행자)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축조례에는 도시 및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업무대행자가 현장 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때에 건축사협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

** 자문사항 : 건축물이 주변과의 조화 여부, 건축물의 형태와 색상과의 관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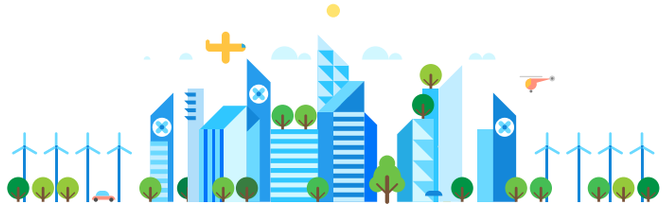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 첨부 제출	»	·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 폐지

▷ 법령에 근거 없는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절차를 폐지하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시행('16. 12.)

개선효과

▷ 건축사협회의 건축물 미관 자문신청 업무 폐지로 건축주 부담 경감





68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부서 중구 건설과 600-4734

개선배경

▷ 부평동 1가 지역 일대는 시장(부평깡통야시장) 및 상가로 이루어진 상업 지역으로 소상공인의 투자수요는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지역임

▷ 1953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미집행)되어 낡고 노후화된 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 등에도 대수선, 신축 등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 및 시장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로규모 : L=350m, B=8m

»

개선 후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폐지
  - 도로규모 : L=88m, B=8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이용 중인 구간(L=88m)을 제외한 구간(L=262m)은 도로 폐지('16. 12.)

개선효과

▷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로 시장 투자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



개선 전 : L=350m, B=8m



개선 후 : L=88m, B=8m

69 지역여건에 맞는 주유소 배치계획 재정비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888-1221, 강서구 건설과 970-4723

개선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하도록 규정*

*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

▷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유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나 주유소 배치계획 규제로 인해 설치 불가

개선내용

개선 전

· 주유소 배치정수 : 15개소

»

개선 후

· 주유소 배치정수 : 17개소(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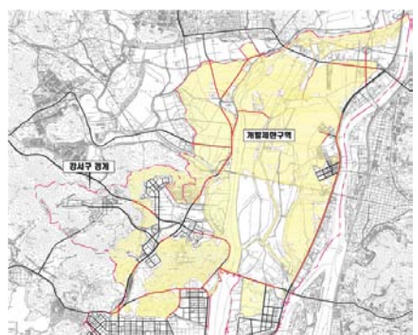
* 창원~부산간 도로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구간에 주유소 배치정수 증가

▷ 부산시 규제신고센터 접수('15. 8.)되어 실무회의를 거쳐 배치계획 변경 요청 (시 → 구, '15. 8. ~ '16. 1.), 배치계획 용역결과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공고('17. 3.)

개선효과

▷ 지역개발에 따른 주유소 설치수요 충족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70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 폐지

추진부서 연제구 건축과 665-4592

개선배경

▷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미관지구 지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사항이 영세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연산R~거성사거리 구간(약 1.3㎞), 옥외 골프연습장, 창고, 공장, 철물점, 건재상, 공구상, 장의사, 카인테리어, 세차장, 중고자동차 매매장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상징가로변의 도시 미관이나 환경에 심히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한

▷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에 따라 아시아드대로(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종합운동장역 구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운영 중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건의사항('16. 8.)으로 아시아드 상징가로변 건축허가 제도개선 사항 폐지('16. 10.)

개선효과

▷ 관련 업종 사업자 부담 완화 및 영세중소기업 유치 기반 조성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사례집 기능별 분류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규제신고처

온라인(인터넷)

▷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

규제정보포털 > 규제개혁 신문고 > 건의 신청

▷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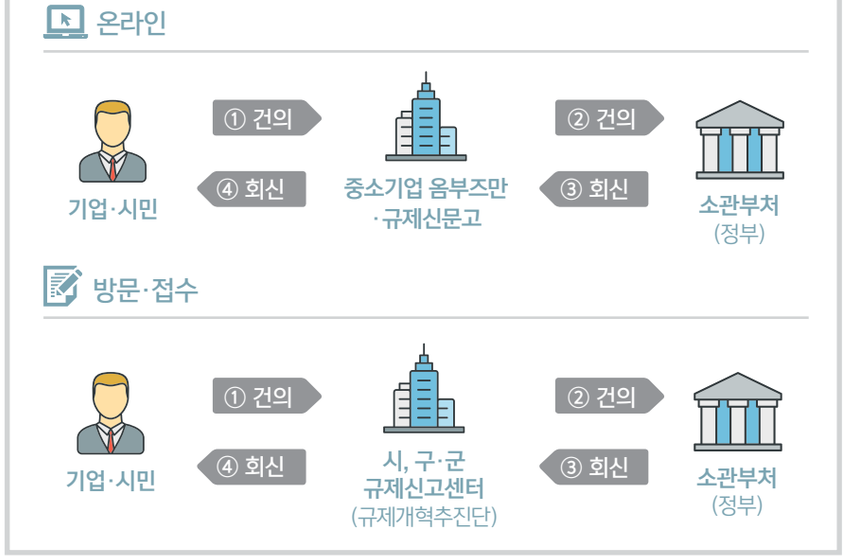
중소기업 옴부즈만 > 규제애로신고

방문·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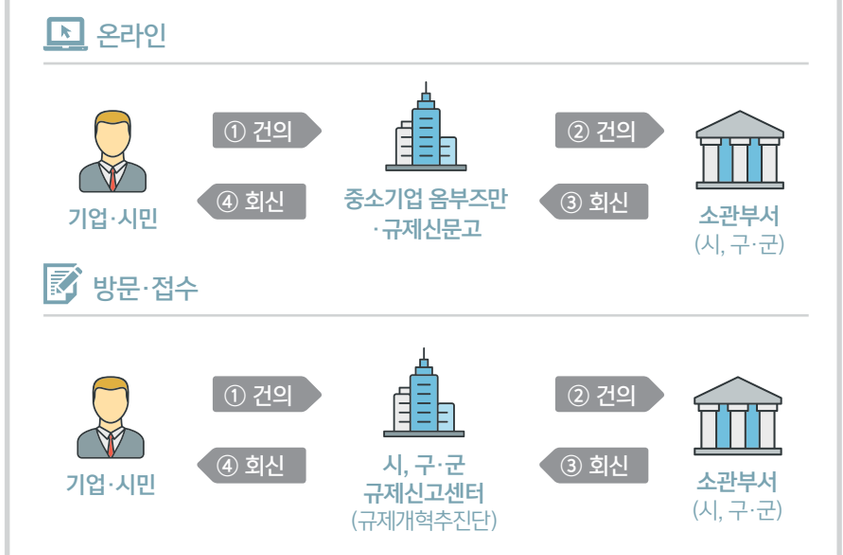
구분	방문	전화
부산광역시(본청)	시청 11층 규제개혁추진단	888-1221~3
중구	구청 4층 기획감사실	600-4033~4
서구	구청(본관) 3층 기획감사실	240-4031~4
동구	구청 5층 기획감사실	440-4034
영도구	구청 2층 기획감사실	419-4081, 4083
부산진구	구청 4층 기획조정실	605-4032, 4033
동래구	구청(본관) 2층 기획감사실	550-4042~3
남구	구청 6층 기획감사실	607-4033, 4035
북구	구청(제1별관) 3층 기획실	309-4031~5
해운대구	구청 3층 기획조정실	749-6171~4
사하구	구청(본관) 2층 기획실	220-4036
금정구	구청(정문앞) 규제개혁상담센터	519-4032, 4033
강서구	구청 6층 기획감사실	970-4032, 4033
연제구	구청 3층 기획감사실	665-4025, 4027
수영구	구청 2층 기획감사실	610-4033, 4034
사상구	구청 5층 청렴감사팀	310-4042, 4043
기장군	군청 3층 기획청렴실	709-4035

규제신고 처리절차

중앙규제(중앙부처의 법령·인허가 행태 규제)



지방규제(지자체의 조례·규칙·인허가 행태 규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사전 컨설팅 감사란?

▷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신청 방법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

규제 관련 업무부서 → 시 감사관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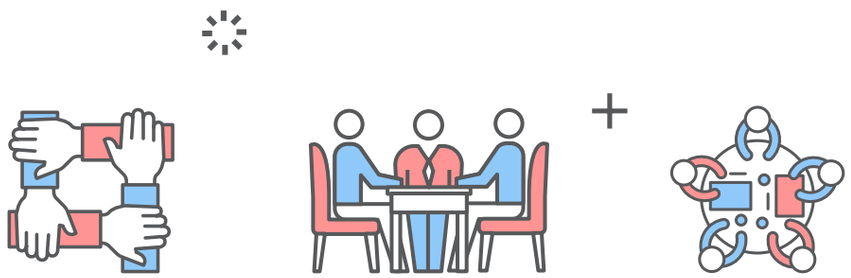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규제 관련 업무부서 → 구·군 등 감사부서 컨설팅 또는 경유 → 시 감사관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 시, 구·군 등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신청

결과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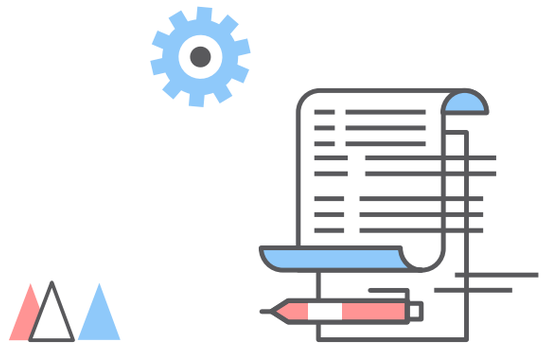
▷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 또는 행정자치부 컨설팅 의뢰



사례집 기능별 분류

연번	분야	부문
1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3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4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
5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7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8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9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10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1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 분야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서 2017년 예산서의 부서별 분야(부문)와 동일하며,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관련 시본청 부서의 분야로 설정



청년韓부산

규제
개선사례
70선°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부산광역시(규제개혁추진단)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전화 051-888-1214
팩스 051-888-1219
기획·디자인 디자인쿠키(051-927-0518)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부산광역시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